##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76호, 제77호 관련)

2021. 3. 24.

증권선물위원회

- 1. 일 시 : 2021년 3월 24일(수) 14:00~20:17
-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 3. 출석위원
- 도 규 상 위원장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 4. 회의경과

- □ 의결안건 제76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검사실시 배경에 '해외펀드를 주로 운용하는 전문 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위험관리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펀드 관련해서 몇 개사를 검사하셨는지?
  - (보고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가 워낙 커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던 사항임.
  - 0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77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희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써 지난 60여년 동안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여 왔으나,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저희는 투자상품으로이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생각이 컸고, 실제로 이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 체의 x.x%에 불과하며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임. 저희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로서 의 권한과 책임 및 범위 그리고 영업점에서의 불완전판 매에 대한 실질내용이 충분히 감안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셨으면 함. 특히, 전체를 중대 위반으로 판단해 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실 질관계와 법리적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 림. 아울러 고객손실의 원인이 해외 운용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고 저희 은행이 손해발생을 미리 예상했거나 운용사와의 어떠한 유착이나 비리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간의 사후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저희 은행 은 이번 일을 계기로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획기적으 로 강화·개선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음. 부디 이런 일이 발생한 그간의 사정과 불완전판매의 실질내용 그리고 감독당국의 주의를 통한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저희 은행의 노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과태료 적용에 대해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림.

▶ (진술인) 중소기업은행의 대리인임. 기업은행은 지난 ×월
□□□□□□ 펀드 및 ⊗⊗⊗⊗ 펀드를 편입한 신탁상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기관제재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오늘은 그중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 과태료 관련 조치원인

사실 및 산정 내역 말씀드리겠음. 과태료 관련 조치원인 사실은 크게 네 가지임.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설명 서 교부의무 위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 한 투자 권유한 행위, 투자광고 규정 위반임. 우선, 설명 내용 확인의무 위반은 은행은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고객으로부터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  $\square$  펀드 관련해서  $\times \times$ 건,  $\otimes \otimes \otimes \otimes$  신탁 관련해서  $\times$ 건 이 지적되었음.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설 명서를 교부하였는지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다음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와 관련해서는 투자권유자격증 미보유/효력정지 상태에서 펀드에 투자권유한 점이 지적되었으며 ⊗⊗⊗⊗ 신탁 관련해서 ×건이 지적되었음. 투자광고 규정 위반 과 관련해서는 광고내용에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손실 귀 속 내용이 포함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 사전심의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 펀드 문자메 시지 ×건이 지적되었음. 과태료 산정은 동기 및 결과, 감 경사유를 고려해서 산정되는데 조치원인 4가지 사실에 대 하여 동기는 모두 '상' 결과는 모두 '중대'로 하여 과태료 가 부과되었으며 특히 법정최고과태료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음. 그에 따라서 총 억 x,xxx만 원이 부과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선,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과태료 건임.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요소도 중요하지 만 실질적인 요소로 판단해야 할 것임. 금융감독원이 불 완전판매로 지적한 사례를 보면 고객의 요청으로 '설명

의무 이행' 및 '서류 작성'은 실질적으로 영업점에서 하 였고 '전산절차'만 WM센터에서 한 건들에 대해 모두 불 완전판매로 지적하였음. 그러나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설 명서 교부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소가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즉, 실제 고객이 설명을 듣고 이 해하였는지, 실제 고객에게 설명서가 교부되었는지에 대 해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당행은 영업점에서 실질적으로 설명의무를 준수하였고 서류상 서명 등 절차를 이행하였 음. 즉,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에게 설명내용을 확 인받지 않았다거나 설명서를 미교부하는 등 실질적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충분한 입증이 있는지가 의문임. 특히,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음.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하 고 있는데 그런데 조치원인 사실은 설명서를 미교부하 였다는 것보다는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거나 수령 거절 하였다는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과태료 처분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자본시장법령은 설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확인받 을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치원인 사실 자 체로 제재대상인지 의문이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질문 지를 통해 판매직원들의 답변을 받았는데 직원이 설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고 려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체크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설명 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분류하였음. 질문지 샘플을 보시면

"투자설명서 교부: 받았음, 거부함 체크항목을 본인이 임 의로 체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 고 하면서 8개의 선택지를 두고 있고 첫 번째 항목 '①투 자자가 직접 '받았음'에 체크하였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직접 교부하였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수이고 나머지 7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미준수로 분류하였음. 그런데 4 번 항목을 보시면 '④본인이 임의로 '받았음'에 체크하였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직접 교부하였음' 그리고 '⑥본인이 임 의로 '거부함'에 체크하였고, (간이)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음'이를 미준수로 하였는데 이 ④와 ⑥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직원이 설명서 교부에 대한 고객의 의사 를 먼저 확인한 후 체크만 대신하고 설명서를 교부한 경 우도 있고, 고객이 진정으로 교부를 거부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항목까지 ④와 ⑥에 포함되어 미준수로 판단되었음. 그리고 8번 항목을 보시면 '⑧투자설명서는 WM센터에서 일괄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체크하지 않았음'인데 실제로 영업점이 아닌 WM센터에 서 설명서가 교부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미준수로 포함되어 질문서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음. 금융투자협회「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도 투자자 정보 확인서상의 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실제 고객의 의사 등 실질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 '체크'만을 기준으 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이와 관련하여 제재에 대한 입증 정도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의 적법 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고,

여기서의 입증이란 고도의 개연성. 즉,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이 확인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음. 단순히 고객 본인이 직접 '체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 부과 요건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 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 투자자들에게 설명서가 교부된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설명서 없이 복잡한 펀 드상품을 설명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고 고객은 설명 후 설명서를 가져가거나 두고 가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임. 설명의무 관련 사실은 각 직원별로 포괄하여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규정 <별표3>제2호 '나'목에 따르면 행위의 근접성 및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위반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 지 않고 하나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 부 2018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설서에도 일정기간 동 안 계속된 11건의 도서정가제 규정 위반 판매행위가 포괄 하여 1개의 규범적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1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음. 본 건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라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 한 영업점 직원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다 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일 위 반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원별로 포괄하여 1개의 행 위"로 제재될 수 있음. 이에 따르면 설명내용 확인의무의 경우 직원 ××명을 기준으로 ××건, 설명서 교부의무 위

반 관련하여서는 직원 ××명을 기준으로 ××건으로 과태료 가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이러한 점들을 종 합하여 볼 때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관련하여 당행으로서 는 기준금액 x,xxx만 원을 기준으로 동기는 '하'로 낮추 고 건수는 xx건으로 하여 x억 x,xxx만 원 정도가 합리 적이지 않을까 생각됨. 다음으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설명서 교부 없이 설명되기 어 려운 상황이고 입증의 문제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제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다만, 제재를 하더 라도 기준금액 x,xxx만원을 기준으로 동기는 '하'로 낮추 고 위반결과는 '중대' 또는 '보통', 건수는 ××건으로 하여 ×억 ×,×××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싶음. 다음으 로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에 대해 살펴보겠음. ⊗⊗⊗⊗ 신탁은 특정금전신탁상품임. 특정 금전신탁상품의 경우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판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에 한 정됨. 그런데 ⊗⊗⊗⊗ 신탁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에 투자 하지 않았음. ⊗⊗⊗⊗ 신탁은 우량채권펀드 및 ⊘⊘⊘⊘ ⊘ 펀드에 투자했는데 우량채권 펀드의 경우에는 A-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고 ②②②②② 펀드의 경우에는 기 본적으로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였음. 즉, 무자격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가 금지대상 인데  $\otimes \otimes \otimes \otimes \otimes$  신탁은 실제 파생상품이나 파생적 요소가 있는 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이 아니었음. 본 사례를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음. 금 년 ×월×일자 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타행은 ×건에 대하여 무자격자가 파생상품에 대

한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xx건에 대하여 무자격자가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점이 지 적되었음. 다만, 이에 대하여 자율처리로 마무리 하였음. 그런데 당행의 경우에는 ×건에 대하여 무자격자가 파생상 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에 투자를 권유하였다 고 지적하면서 과태료 ×억 원을 부과하고 있음. 이는 동 일한 사안에 대하여 타행에 대한 제재와 비교할 때 형평 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금감원 입장에 따라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금액 ×,×××만 원을 기준으로 동기는 '하', 위반결과는 '보통', 건수는 ×건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특히, × 건으로 축소하는 이유는 ×건 중 ×건은 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제외되어야 함. ×건은 단 순 업무처리 미숙에 불과하며 고의적인 위반이 아님. 다 음으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하여 살펴보겠음. 투자광 고 위반에 대하여 ×건이 지적되었는데 그중 ×건은 특정 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여서 '광고'라고 보기 힘듦. 특정 고객을 상대로 '추천상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임.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을 보면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 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고 하였고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보면 '광고란, 소비 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음. 지적된 ×건 중 ×건은 특정 고객에게 발송된 것이며, ×건 은 홍보목적이 아니라 상품을 사전에 미리 예약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써 광고에 해당 하기 힘듦. 이와 같은 광고 위반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의 영업점에서 ×건에 불과함. 당행의 근본적인 시스템적 문제 또는 소극적 방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극 소수 직원에 의한 실수였음. 특히, ×건 중 ×건은 제외되 어야 하는데 ×건은 사전에 상품을 예약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것이고 ×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 별 고객에게 보낸 것임. 나머지 ×건의 경우에도 ×명의 직 원이 같은 고객에게 ×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임. 따라 서 이것도 ×건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음. 이 사례도 보면 고객이 좋은 상품이 있으면 안내해 달라 고 해서 메시지를 보낸 사안임.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광고규정 위반 건으로 제재하기 어렵지만 만약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금액 ×억 원을 기준으로 동기는 '하', 위반결과는 '보통', 건수는 ×건으로 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음. 다음으로 과태 료 부과 예정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금감 원은 위반동기를 일괄적으로 '상'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환 규정 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 는 경우'에 '상'으로 하고, '고의에 의한 경우이지만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중'으 로 하고 그 이외에는 '하'로 하고 있음. 앞서 말씀드린 지 적사항들은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됨. 금융감독원은 위반동기를 일괄적으로 '상'으로 분류하였는데 본건은 고의적인 위 반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형식적 미흡" 또는 "단순업무 실 수"에 불과함. 20××년 타은행 DLF상품에 대한 증선위 의 결에서도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경감한 사례가 있다

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람. 위반행위들은 포괄하여 1개 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 '나'목에 따르 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도 "행위의 근접성 및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위반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지 않고 하나로 부과할 수 있음'이 라고 했음. 금융감독원은 개별 건수를 단순합산하였으나 불완전판매의 경우 행위 근접성, 행위의사 단일성, 위반규 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례들이므로 포괄하여 1개의 행 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음. 그리고 법률상 최고한도액 10배 상한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 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 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실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이러한 감경규정이 과태료 부과의 '상한'으로 기능해 온 것으로 이 해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위반행위가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함"이라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위반결과에서 같은 이유로 "중대"라 고 판단하면서 동일 사유로 감경하지 않는 것은 중복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한 측면이 있음. 감경에 대한 배제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 행정의 원칙, 형평원칙에 맞다고 사료됨. 당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

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람. 당행은 투자원금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 ×월 ××일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도 적극 수용할 예정 임. □□□□□ 펀드의 경우에는 ×××명 중 ×××명이 보상 안에 동의하였고,  $\otimes \otimes \otimes \otimes$  신탁의 경우에도  $\times \times \%$ 의 동의 로 고객들이 보상안에 동의하였음. 국책은행으로서 당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당행은 설립 취지에 따 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투자상품 관련 경쟁 적 판매 확대는 지양하고 있음. 20××년말 펀드 판매수수 료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보시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서 훨씬 낮은 점을 볼 수 있음.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종합적으로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관련해서 동기는 '하', 위반결과는 '중대', 건수는 ××건으 로 과태료를 계산하고 설명서 교부의무와 관련해서는 제 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기는 '하', 위반결과는 '중대' 또는 '보통', 건수 는 ××건으로 해서 ×억 ×,×××만 원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나 싶음. 무자격자 투자권유와 관련해서도 제재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는데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기는 '하', 위반결과는 '보통', 건수는 ×건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아 보임. 그다음 투자광고와 관련해서도 동기는 '하', 위반결 과는 '보통', 건수는 ×건으로 해서 과태료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 신 탁은 관계사들과 공동으로 투자손실의 ××%, □□□□□ 펀드는 판매사 중 처음으로 투자원금의 ××%를 선지급하 여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고 은행장이 직접

투자자들과 면담하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음. 국책은행으로서의 당행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과태료 수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림. 본건은 고객 손실의 주된 원인이 해외 및 국내운용사의 사기적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불완전판매와 투자자간 손실의 인과관계가 적음. 즉,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상품의 위험성을 잘못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고 예상하지 못한 운용사의 사기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사례임. 형식적인 측면에서 위반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불완전판매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부과안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형평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탁드림.

- (위원) 우선, 법률대리인이 설명한 내용 중 '본건 고객손실 의 주된 원인이 해외운용사의 사기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므로, 불완전판매와 투자자 손실간의 인과관계는 적음'이라 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 ▶ (진술인) 사안 자체가 보통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설명 내용을 잘못 설명하거나 오인하거나 안전성을 너무 과장하거나 이런 사항들인데, 이 사건에서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운용사가 사기 행위를 했고 그 사기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에서 밝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내부고발에 따라 그 사기가 밝혀지면서 손실을 보게 된것임. 예상치 못한 운용사의 사기행위로 인한 손실이어서

보통의 일반적인 불완전판매와는 다름.

- (위원) 금감원, 대리인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 (보고자) 일단, 투자 권유하는 시점에 방금 대리인이 말씀하 신 싫습라는 자산운용사가 등장하는데 그 자산운용사가 애초부터 같이 공동투자한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 지 않았음. 따라서 투자자들은 가입하는 시점에 □□□□□ 자산운용㈜이 직접 SPC를 통해서 투자대상인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이라든지 부동산 담보채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가입을 한 것이지, 그 이면에 중간에 싫습습라 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운용하는 또 다른 SPC가 관여하고 또 다른 자산들이 편입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자들이 몰랐던 싫습라는 곳의 대 표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요습습가 투자하고 운용하고 있던 자산들에서 부 실도 실제로 발생을 했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 득이 없어 보임.
- (위원) '고객의 요청으로 설명의무이행 및 서류작성은 실질 적으로 영업점에서 하고, 전산절차만 WM센터에서 한 건들 에 대해 모두 불완전판매로 지적'한 것에 대해 대리인 측은 이것이 타당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요소로 판단해 야 된다는 것인데 금감원은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인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 (보고자) 장소가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인 요인으로 지적한 것이 아님. 왜냐하면 저희가 질문서를 보내서 각투자권유를 했던 PB들한테 직접 답변서도 받았고 그와는 별개로 중소기업은행 검사부에서 해당 판매직원들을 대상으로자체 검사도 했음. 그 자체 검사 과정에서 자기들이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고 시인한 부분을 저희들이 채택했던 것임.
- (위원) 금감원 측에서 중소기업은행 직원들한테 확인했더니 중소기업은행 자체 내에서 검사인지 감사를 해서 법규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 (보고자) 저희가 권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설명서를 교부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 일일이 질문서를 교부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온 것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질문서 돌린 것과 별개로 중소 기업은행 검사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음. 거기에서 조사할 때 직원들이 자기들이 전부 위반했다고 시인을 했었 는데 저희가 질문서를 돌리니까 아니라고 부인한 경우에는 시인을 한 것과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 것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깝다고 저희들은 봤던 것임.
  - (진술인) 서류상의 흠결 여부를 위주로 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설명서 교부의무라든가, 설명의무에 대한 지적은 아니었던 것임. 참고로 □□□□□□ 같은 경우 사모상품이었기 때문에 자체 검사부에서 지적했을때는 애당초 전문사모상품은 설명서 교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를 시키고 했었음. 그래서 검사부의 지적 여

부로 이 과태료 산정을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음. 그리고 직원들이 질문서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사모상품인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가 있지는 않음. 그런데 질문서상에는 (간이)투자설명서의 교부 여부를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음.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사전 배경 없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답변한 사례들도 있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다 불완전판매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함.

- (보고자) 중소기업은행 판매직원들이 답변할 때 방금 말씀하 신 것처럼 단순한 착각 때문에 시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한 알고 답변했기 때문에 실 제로 교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라고 저희들 은 판단하고 있음.
- (위원) 양쪽이 동일한 사실(fact)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겠음. 자본시장법령은 설명서교부 여부를 확인 받을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자체로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진술인 측 해석에 대해 금감원은 어떤 입장인지?
- (보고자) 저희가 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한 것이 아님. 여기에서 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은 법에 따르면 교부받지 않겠다

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우선 교부하라고 되어 있음. 저희가 단지 확인 안 했다는 것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고 확인도 없이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임. 그리고실제로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거절함'으로 고객 본인의 체크가 안 되어 있고 본인의 자필서명이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 설명서가 교부되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방법이 없음.

- (위원) 중소기업은행 측은 어떤 입장인지?
  - ▶ (진술인) 저희가 금감원 제재심 단계에서 입수했던 조치안 에 의하면 이 부분 제재사실이 '설명서 교부를 하지 않았 다.'는 것이 아니고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 거절함으로 확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셨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구성요건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림.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판례에서 인용했던 것 처럼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 청에 있다고 생각이 됨. 개별적인 PB들의 판매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서를 교부했는지 여부에 대 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단지 PB들한테 질문서를 보냈었음. 질문서 내용만 가지고 체크 부분을 문제 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PB 본인이 임의로 '받았음'에 체크하였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직접 교부하였음'이런 경우까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 하를 떠나서 PB 본인이 임의로 기재를 했으니까 이것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신 것으로 이 해가 됨. 따라서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PB

뿐만 아니라 개별 고객들한테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배경설명 없이 단순히 질문서의 체크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위반을 단정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음.

- (위원) 금감원 주장에 대해서 대리인이 다른 말씀을 하는데 고객이 직접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같음.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인용해 놓고 계신데 '반드시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감원도 동의하는지?
- (위원) 이는 투자권유자문인력 관련된 것은 규정의 문제 같음. 투자권유자문인력에 관한 규정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이라고 대리인 측에서 인용해 놓고 있는데 대리인의 주장은 금감원이 규정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 같음.
  - ▶ (진술인) 실질적으로 이 취지를 고려하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 권유인력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하는 것인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파생생품에 투자하는 편드가 전혀 아니었음. ⊗⊗⊗⊗ 신탁은 말씀드린 대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여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투자권유 자문인력 제도를 요청하는 이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듦.
- (위원) 파생상품 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금감원은 어떻게 생각

## 하는지?

- (보고자) 파생상품 투자 여부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권유를 하는 시점에 신탁계약서나 상품제안서상에 이 상품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런데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등을 편입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 자격이 없는 자가 권유를 했기 때문에 법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음.
- (위원)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 같음. 광고 부분인데 '특정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이것이 중소기업은행 측 주장임. 의견서에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는데 '광고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리고 또 하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인용을 해 놓고 있음. '광고란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음. 대리인 주장은 ×건을 지적하고 있는데 × 건은 특정고객에게 발송한 것이고 ×건은 상품을 사전에 예약한 고객의 요청으로 안내한 것이다, 그래서 이 건은 광고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임. '○○○ 고객님을 위한 추천 상품입니다.'라는 제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음. 금감원에서 이러한 이유로 광고로 봤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음.
- (보고자) 금융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2016년에 유권해석을 내

린 것이 있음. 여기에 보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대상은 특정 여부, 또는 인원수의 다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유인의 목적 여부를 가지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음. 지금 중소기업은행측은 숫자가 적고 일부에만 했기 때문에 광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한 설명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음.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고객이 요청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상품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광고로 봐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그 광고메시지를 받고 해당 고객이 가입을 했음.

- ▶ (진술인) 지금 말씀하신 자격 관련해서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 는 ×건 중 ×건에 대해서는 판매한 직원이 관련된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있었음.
- (위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것 아 닌지?
  - ▶ (진술인) 금융감독원 측에서 최초에 지적한 사항은 펀드투 자권유자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파생상품을 팔 때 권유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실제 저희 쪽에서 파악했을 때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은 그 ×건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음. 그리고 그분들은 자격증 유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음.

- ▶ (진술인) 광고 관련한 ×명에 대해서는 이 상품 자체가 영업점마다 판매수량에 한계가 있어서 고객들이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이런 상품이 다시 출시되면 알려 달라고했던 사항임. 그래서 고객들이 "이 상품이 나오면 미리알려 달라," 그 상품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었음. 그런 차원에서 PB담당자가 상품의 물량이 영업점에 배정된 가운데미리 요청한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런 내용을 다시알려드린 것임.
- (위원) 대리인 측에서는 기존의 고객 서비스 내지는 관리 차 원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고객 요청에 의해서 발송한 것은 ×건 밖에 없음. 나머지는 전부 요청과 관계없이 발송한 것이고, 그리고 고객이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안내할 때는 상품의 장점만 안내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까지 다 안내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준법감시인의 심사를 받고 심사필까지 찍어서 보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다 누락한 것임.
  - ▶ (진술인) 지적된 사례 ×건 중에 총 ×건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발송되었던 부분이고 모든 내용을 다 담지 못한 것 은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분량의 한계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 해서는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보고자)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문자 분량이 길어서 생략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분량이 많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MMS와 같이 긴 메시지가 전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고 전부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실제로 중소기업은행이 발송한 것들은 긴메시지 서비스가 가능한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담지 않았던 것임.
- (위원) 대리인 의견서를 보면 '전체 ×××개 영업점 중 단 ×개 영업점에서 총 ×건 발생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 중 ×개 영업점에서 총 ×건으로 극소수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셨는데 이런 부 분에 대해 금감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건수가 많든 적든 해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은행에서 올바르게 안내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투자를 했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런 부분을 투자 자보호의 관점에서 본다면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많다고 보 호해 주고 적다고 보호해 주지 않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상품에 가입을 했고 전부 다 피해를 봤음.
- (위원) 증선위는 과태료를 결정하는 기관이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상세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음. 먼저, 불완전판매와 관련되어 설명의무로 위반사항이 지적된 것이 \*\*건이고 그 \*\*건 중에서 대리인 쪽에서는 영업점과 WM센터의 공동관리제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 지금 이 \*건,

××건, ×건 중에 회사 쪽에서 주장하는 공동관리제도로 인해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이 몇 개가 있는지?

- ▶ (진술인) 일단,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관련해서 공동관리취지로 저희는 설명을 더 강화했던 부분임. 그래서 지금지적하신 ×건, ××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공동관리를 통해 설명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저희 공동관리 자체는 이렇게 어려운 사모상품들이 일반영업점에서 판매될 때 무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의 PB팀장이 직접 설명하게끔 되어 있어 센터에서 발급하게 되는데 간혹 영업점에서 고객님들이 센터까지 오기 어려울 때 센터의 PB팀장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게 됨. 그렇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통해 진행되었던 건들은 오히려 설명을 강화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적된 건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음.
- (위원) 그러면 ××건 중 ×건, ××건, ×건 중에 공동관리제도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건 자체가 다 설명 내용을 확인 했다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대한 투자권유 과태료 관련 부분임. 여기에서 이슈가 무엇이냐 하면 계약서에 파 생상품에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

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을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의 이슈는 있음. 그런데 계약서상에서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읽어드리면 '⊗⊗⊗⊗ 신탁은 신탁계약서상 파생상품매매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라고 해서「신탁계약서」제16조의2, '가'목을 보면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신탁의 상품제안서상에는 ⊘⊘⊘⊘⊘ 펀드의운용전략으로서 Total Return Swap(TRS)을 이용한 레버리지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부분 인정하는지?

- ▶ (진술인) 신탁계약서 자체에는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운용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 실무임. 다만, 실제로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
- ▶ (진술인)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전드가 Fixed Income임. 기본적으로 사채를 전제로 하는 투자자이고 그다음에 신탁계약을 보시면 비단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나오고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나오고 전환사채로 나오고 주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나옴. 그러면 그런 해당 상품에 대한 모든 판매자격을 갖추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위원) 금감원,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적용을 할 때 계약서상 으로 적시되어 있으면 '파생상품 등'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운용까지 해야 '파생상품 등'에 해당되는지?
- (보고자) 투자를 권유하는 시점에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투자제안서나 투자설명서상에도 TRS에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고객의 입장에서는 투자권유 당시에 이것이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를 시점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함.
  - ▶ (진술인) 국·공채 펀드를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파생상품을 투자하면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에 의해 위험한 상 품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 (위원) 투자광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관련인데 ×건 중 ×건은 특정고객에게 발송한 것이고 ×건은 홍보목적이 아니라 상품을 사전에 예약한 고객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음. 회사 측에 질의 드리겠음. 상품을 사전에 예약한 것이 광고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건의 고객이 상품을 사전에 예약했다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 ▶ (진술인) 그 ×건 관련해서는 해당 직원이 경위서 형태로 작성을 한 자료가 있어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음. 실 제 판매했던 직원이 관련된 광고에 대해 정확한 내역을 기재한 자료가 있음.

- (위원) 진술인 생각에 어떤 사람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경 위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나 믿을 수 있겠는지?
- ▶ (진술인) 이 부분에 관해 이것이 광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고객이 이것만 보고 상품을 판단했어야 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고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설명이라든 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그 부분 에 대해서 직원이 본인 스스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음.
- (위원)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음. 첫번째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이 두 가지는 금감원의 지적건수로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내용 확인의무로 ××건이 지적되었는데 그 ××건 중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이 미응답이고 그러니까 ①번으로답을 했는데 '투자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 결국금감원은 대리인의 진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내용은 확인을 안 하고 서류상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것, 어떤 형식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음. 그러니까 실질로 회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따로증명하지 않는 이상 금감원은 서류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미응답된 것은 설명이 안 된 것으로 보는 것임. ×건은, 그다음에 '①투자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대필이라는 것임. 대필이라는 것은 꼭 자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의

사를 확인해서 대필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함. 하다못해 투자자로부터 "내가 그렇게 대필하라고 동의했다."는 동의서를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녹취라든가, 아무튼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임. 그런 것이 없는 한 대필로 된 것은 설명을 안 했다고 보겠다는 것임. 이것이 다 동일한 입장임. 첫 번째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가 지고 얘기한 ××건 중에 ×건 미응답, ××건 투자자가 직접 기 명날인하였으나 대필, 그다음에 ②번이라고 대답한 이것은 본인이 임의로 대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자의 의 사에 반했다기 보다는 본인이 임의로 대필을 했고 그 대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었다고 보 는 것임.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은행에서는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에 서는 설명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감원이 제재하는 근거로써는 그러한 사실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은 행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것이냐, 지 금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실질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 가지고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함. 투자설명서도 동일한 관점 임. 결국 어떤 경로든 간에 실제로 대필로 금감원이 판단을 했는데 투자설명서가 교부되었다는 다른 경로의 입증이 되 지 않는 한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임. 오늘 법률대리 인께서 설명하신 것은 그런 건수에 대한 논쟁보다 포괄일죄 로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건수를 추려 오셨음. 설명내용 확 인의무는 ××건이 아닌 ××건. 설명서 교부도 아까 그런 관점 에서 금감원은 ××건이라고 했는데 ××건이라고 그런 기준으 로 산정해 오셨음.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실질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변소를 하시는 것이, 제 기억으로 ㅇㅇ은행과 ㅇㅇ은행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동의서를 받았던 것으로, 사건이발생한 다음에 투자자가 동의서를 해 주지도 않겠지만 진정으로 되었다면 있을 수도 있겠음. 그때 그런 것을 받아온 것을 금감원이 인정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어야 이 건수에 대한 조정 문제가 있을 것 같음. 투자권유자문인력은 그 당시 권유했을 때 기본적으로 금감원은실제 파생상품이 편입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의 최초 구조 자체가 파생상품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문인력도 그런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는 관점인 것이고 그것은 타당한 것 같음.

▼ (진술인) 금감원에서 검사한 내용에 대해 저희가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검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었던 것이고 다만 저희가 진행했었던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여서, 현장에 있는 PB팀장들을통해 의견을 들었음.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직원들한테 다시 설문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 저희가 건수로써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임.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임. 실질적인 건수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고 충분히 의견을 청취했을 때 설명을 안 했다거나 그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고 만약 이 설문이이렇게 나가지 않고 직원 1명, 1명을 대상으로 면담식으로

확인을 했다면 이와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보고자) 방금 말씀하신 사례 중에 은행 직원들이 답변을 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저희가 질문했을 때는 제대로 교부했고 자필이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은행 감사부에서 자체감사할 때의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는 자필이 아니고 대필이었다고 답한 것이 많이 있었음. 그런 것을 저희가 채택한 것이었음.
  - ▶ (진술인) 기본적으로 작년에 ○○은행 DLF 건에서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당시 상황에서도 분쟁조정 진행 중이고 피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고객들을은행 직원이 접촉해서 가입 받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드린 바 있음. 그래서 그 건에 대해 경위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위원) 진술인 측에 과태료 관련해서 경감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측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음. 제재수준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달라고 하는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저희 증선위에 보낸 자료가 있음. 거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 선지급이 그것은 선지급이 아니고 이자까지 받는 대출이라고 주장함. 이것이 무슨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이냐고 오히려 울분을 토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러면서 제재를 경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오히려 엄하게 벌을 줘야 된

다고 주장하고 있음. 두 번째는 이 제재수준(안)에 대해서 진술인 측의 대리인이 산정을 이렇게 조목조목 다시 해 온 것은 처음 보는 사례 같은데 제재 경감으로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수익을 위해 그렇게 무분별하게 불완전판매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불완전판매라는 것은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법령상 사전적으로 지키도록 의무화시켜 놓은 것들은 못 지키면 불완전판매가 되는 것임.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답변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 첫 번째 말씀하셨던 대책에 관련된 의견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음. 제출한 자료에는 저희가 지급했던 것 과 관련해서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 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부분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저희가 실행했던 ××% 선가지급 관련은 사적화의 일환으 로 유동성 공급에 의미가 있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 쳐서 그 가지급이 결정되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펀드가 회수가 되면 정산하는 3가지 단계를 거치게끔 되어 있음. 이 3단계를 거쳐서 마무리 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지권설정계약서를 받 았다 함은 이 정산단계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고 보시면 될 것 같음.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 가 ××% 선가지급을 함에 있어서 다른 판매사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었음. 중소기업은행에서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부분임을 강조하는 바임. 그리고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그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부분이라 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단순한 수익증권 담보대 출이 불가하다는 논리는 과다한 포장이라고 생각함. 그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은행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신거래약정 서를 받았을 것임. 이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차에 걸친 정산단계의 수단으로써 설정계약서 가 필요했던 것임. 저희 취지는 사적화의 일환으로 유동 성공급을 위한 ××% 선가지급이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음. 두 번째 부분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노력임.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공동관리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은 행에서 이 부분을 넓게 팔려고 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 모든 영업점에 판매 권한을 풀어서 영업점에 다 판매 하게 했을 경우가 훨씬 더 높을 것임. 저희는 오히려 전 문가인 PB팀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강하 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판매비중이나 그런 부분이 현저히 낮아 서 그런 노력도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 (참여자) 중소기업은행 측에 여쭙고 싶은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들 아니겠는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하는 것도 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에 의하면 그런 입증 자료도 보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만약 이 제재를 면하 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행 측에서 설명의무나 이런 것을 이 행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인지?

- ▶ (진술인) 서류는 다 있는데 감독당국에서는 그것이 PB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여서 그 진실성과 신빙성을 지적하신 부분으로 이해되나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름. 기본적으로 저희는 고객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이렇게 다 써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자료를 제시했고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 자료들의 분량이 좀 있기때문에 그것을 안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음.
- (참여자)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취지 아닌지?
  - ▶ (진술인) 저희는 확인을 했고 확인을 받았다는 부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감독당국에서는 대필이라고 주장하고 계심.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PB와고객 그리고 감독당국과 3자대면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음.
- (참여자) 확인 받았다는 것이 소비자의 자필이 들어있거나 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인지?
  - (진술인) 저희가 서류만 봤지 이것이 자필이다 대필이다 하 는 필적까지 대조하지는 않음.
- (참여자) 그러면 변소자료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선고내용을

넣어주셨는데 대법원의 선고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쟁점이 동일해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포괄해서 하나로 보아야 된다고 하면, '법무부 2018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설서'의 내용을 주장하셨는데 이것은 도서정가제라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반하지 말라고했을 때 여기에는 특정한 피해자라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도서정가제를 일관하게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고본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즉, 피해자가 있는 사항이니까이것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가능한지?

- ▶ (진술인) 저희가 포괄일죄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기본적으로 저희는 설명서 교부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는 주의적 주장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건수가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감독당국에서는 설문지 내용을 ×개로유형화해서 그중에 ×개를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설명서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을 하셨음. 그렇다면 저희가 볼때는 PB들이 일관되게 지적한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서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을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은 PB 개인들, 그 사람마다 ×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은다르지만 같은 유형의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음.
- (보고자) 금감원 검사국에서 한 가지 긴급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음. 아까 진술인 측에서 자필기재 부분으로 주장하신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반드시 자필기재하지 않고 대신해도 된다는 내용은 회피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고객이 설명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설명서를 교부받았는지 확인할 때 기재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은행에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있음. 투자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적합성 원칙인데 이것을 확인할 때 일일이 고객이 다 수기로 작성하기 불편하니까 그것은 PC에 그냥 기입하는 식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설명을 받았다거나 설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확인할 때 자필로 안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

- ▶ (진술인) 그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기재를 했고 그것에 유사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 한 가지는 설명서 교부의무, 교부를 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자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위원장) 오늘 중소기업은행 과태료 부과건과 관련해서는 설명 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투자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 총 ×××건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금감원 측이 안건을 부의 하셨고 이에 대해서 진술인 측에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고 쟁점으로 남아있음. 따라서 오늘 안건을 의결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겠음. 우선, 총 ×××건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금감원 측과 진술인 측에서는 각각의 주장 그리고 그 증빙자료를 각각 ×××건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되 만약 제출이 안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상대편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저희가 판단하겠음. 그리고 두 번째, 제재양정과 관련해서 '고의', '중과실'여부와 관련한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다음에 세 번째, 다음번 증선위 운영과 관련해서 대심방식을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대심방식을 희망한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람. 대심방식으로 할 것으로 결정이 되면 차기증선위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자료에 대해서는 각각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저희가 받은 자료를 양측에 공히 제공하겠음. 다만, 한 측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제출한 자료에 대해 양측에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음. 그렇게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 증선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음.

ㅇ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